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7 - 9 호

「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8월 25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병역법」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예우대상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5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

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